

한국모태펀드

2018년 출자사업 계획 변경 공고

2018년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1,585억원 이내 (혁신모험 315억원, 중진 790억원, 특허 350억원, 환경 130억원)	
기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시 출자사업방식을 준용 	
출자 대상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으로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신청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제안서 접수 : 매월 7일 이내 <li style="padding-left: 20px;">* 단, 5월 출자사업은 18일까지 접수 · 출자선정(심의) : 매월 21일 이후 영업일 중 택 1 <li style="padding-left: 20px;">* 선정(심의) 시기는 다음 출자사업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5월 출자사업의 경우 일정을 고려하여 6월 이후 영업일 중 택 1 가능 <li style="padding-left: 20px;">* 정시 출자가 있는 월은 접수 및 심의를 정시출자 일정과 동일 일정으로 진행 가능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 형태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투자조합은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B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 이외 출자 대상은 소셜임팩트 분야B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신청할 수 있음

※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펀드는 증액 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Ⅲ. 주요 출자 조건을 참조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혁신 모험	창업초기		75	125	60%	○
	혁신성장 ^{주1)}		240	700	34.29%	주2)
	소 계		315	825		
중 진	소셜임팩트	A	340	425	80%	○
		B ^{주3)}	100	125	80%	○
		소계	440	550		
	민간제안		350	875	40% ^{주4)}	주4)
	소 계		790	1,425		
합 계			1,105	2,250		
특허	IP 직접투자		180	325	60%	○
	해외IP 수익화		170	305	60%	○
	소 계		350	630		
환경	미래환경산업		130	217	60%	○
총 계			1,585	3,097		

주1) 혁신성장 분야는 펀드 결성총액이 최소 700억원 이상이어야 함

주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점지원분야로 인정

주3) 개인투자조합 신청 시 운용사의 자격요건은 「4. 기타 사항」 참조

주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을 60% 적용하고 중점 지원분야로 인정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최대 출자비율
혁신 모험	창업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성총액의 20%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60%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모태펀드가 기존에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출자했던 분야 또는 정부대책자료* 등 정책목적성이 명확한 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하여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자본을 30% 이상 유치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② 지자체가 출자하고, 지방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③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④ 일자리 창출 계획·목표를 제안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⑤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거나 코넥스 상장이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48개 지역 주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5대 분야 등 	40%
중진	소셜임팩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범위는 운용사가 Track1, Track2 중 선택하여 제안 * Track1을 선택할 경우, 운용사는 소셜벤처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 - Track 1 :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펀드 운용전략을 자율적으로 제안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N SDGs : '15.9월 유엔 총회(Summit)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고용,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소비·생산, 기후 변화, 수중 생태계, 육지 생태계, 평화·정의와 강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div> ② 순수 비영리 조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 	80%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최대 출자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5%;">사회통합</th> <th style="width: 25%;">사회문제(필요)</th> <th style="width: 20%;">공동체(공공)</th> <th style="width: 20%;">환경/생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 분야</td> <td>①취약계층 포용 ②불평등 축소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td> <td>①교육/아이돌봄 ②건강과 웰빙 ③고용/일자리 ④주택/주거 ⑤문화 등</td> <td>①공공장소 활용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td> <td>①수질과 위생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기후변화 ④청정에너지 등</td> </tr> </tbody> </table> <p>- Track 2 : 다음에 속하는 계층·지역창업기업에 투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상세 내역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범위</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창업·취업 애로계층</td> <td>창업 애로층(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국가 평균 실업률(통계청 기준) 보다 실업률이 높은 연령대가 대표이사이거나 6개월 이상 상시 고용된 임직원의 수가 30% 이상인 중소·벤처기업. * 다만,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경우 상시고용 임직원의 기준은 적용 배제</td> <td>· 저소득층 증명서(지자체) · 장애인 증명서 · 연도별 연령별 실업률(통계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창업·취업 애로지역</td> <td>국가 평균 실업률(통계청 기준)보다 높은 지역 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기초자치단체 기준)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소·벤처기업(광역시, 특별시 제외)</td> <td>· 연도별 지역별 실업률(통계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간 저소득 지역</td> <td>수도권 이외지역 중 지역별(기초자치단체 기준) 인구수가 15만 이하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소·벤처 기업</td> <td>· 연도별 지역별 인구수(통계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소셜벤처 전문가 자문단(가칭)이 지정하는 국내의 전문 평가기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예시, B-Corp 등) 소셜벤처 전문가 자문단(가칭)이 지정하는 소셜벤처 클러스터 입주 기업</td> <td>· 인증서</td> </tr> </tbody> </table> <p>* 주목적대상에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사후 평가할 수 있음</p>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취약계층 포용 ②불평등 축소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①교육/아이돌봄 ②건강과 웰빙 ③고용/일자리 ④주택/주거 ⑤문화 등	①공공장소 활용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①수질과 위생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기후변화 ④청정에너지 등	구분	범위	비고	창업·취업 애로계층	창업 애로층(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국가 평균 실업률(통계청 기준) 보다 실업률이 높은 연령대가 대표이사이거나 6개월 이상 상시 고용된 임직원의 수가 30% 이상인 중소·벤처기업. * 다만,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경우 상시고용 임직원의 기준은 적용 배제	· 저소득층 증명서(지자체) · 장애인 증명서 · 연도별 연령별 실업률(통계청)	창업·취업 애로지역	국가 평균 실업률(통계청 기준)보다 높은 지역 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기초자치단체 기준)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소·벤처기업(광역시, 특별시 제외)	· 연도별 지역별 실업률(통계청)	중간 저소득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중 지역별(기초자치단체 기준) 인구수가 15만 이하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소·벤처 기업	· 연도별 지역별 인구수(통계청)	기타	소셜벤처 전문가 자문단(가칭)이 지정하는 국내의 전문 평가기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예시, B-Corp 등) 소셜벤처 전문가 자문단(가칭)이 지정하는 소셜벤처 클러스터 입주 기업	· 인증서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취약계층 포용 ②불평등 축소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①교육/아이돌봄 ②건강과 웰빙 ③고용/일자리 ④주택/주거 ⑤문화 등	①공공장소 활용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①수질과 위생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기후변화 ④청정에너지 등																								
구분	범위	비고																										
창업·취업 애로계층	창업 애로층(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국가 평균 실업률(통계청 기준) 보다 실업률이 높은 연령대가 대표이사이거나 6개월 이상 상시 고용된 임직원의 수가 30% 이상인 중소·벤처기업. * 다만,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경우 상시고용 임직원의 기준은 적용 배제	· 저소득층 증명서(지자체) · 장애인 증명서 · 연도별 연령별 실업률(통계청)																										
창업·취업 애로지역	국가 평균 실업률(통계청 기준)보다 높은 지역 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기초자치단체 기준)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소·벤처기업(광역시, 특별시 제외)	· 연도별 지역별 실업률(통계청)																										
중간 저소득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중 지역별(기초자치단체 기준) 인구수가 15만 이하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소·벤처 기업	· 연도별 지역별 인구수(통계청)																										
기타	소셜벤처 전문가 자문단(가칭)이 지정하는 국내의 전문 평가기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예시, B-Corp 등) 소셜벤처 전문가 자문단(가칭)이 지정하는 소셜벤처 클러스터 입주 기업	· 인증서																										
민간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가 기존에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출자했던 분야 또는 정부대책자료* 등 정책목적성이 명확한 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하며 주목적 투자대상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p>-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자본을 30% 이상 유치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② 지자체가 출자하고, 지방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③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④ 일자리 창출 계획·목표를 제안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⑤ 청년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업에 약정총액 1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p>*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48개 지역주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5대 분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10% 미만 출자로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기 민간제안 분야와 다르게 심사 생략이 가능하며, 약정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모태펀드 출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40% ^{주)}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최대 출자비율
특허	IP직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단, IP Sale & Licenses Back 투자방식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이중 상표권·디자인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20억원)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 	60%
	해외IP 수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창출·출원·보유한(향후 창출·출원 포함) 해외IP 수익화 프로젝트에 50억원 이상 투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 	
환경	미래환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단,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약정총액 20% 이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60%

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을 60% 적용

4. 기타 사항

* 소셜임팩트 분야 B의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형태의 운용사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유형	업무집행조합원	법적 근거
개인	“전문엔젤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
법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고시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엑셀러레이터” 단, 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iv)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하여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혁신모험	중진	특허	환경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 확정으로 신속한 펀드 결성이 가능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	○	○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	○	○	○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단, 수도권 지역은 제외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운용사인 경우	○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		○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단, 혁신모험계정에 한정 적용)	○			
투자실적 등 해당분야 투자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 한정 적용)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증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Σ(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한 조합은 예외로 함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
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 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하였으나,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5%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예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비율은 운용사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 <중진·혁신모험·환경계정>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방안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th> </tr>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colspan="3" style="width: 80%;">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해당사항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 <중진계정 민간제안 분야에서 지방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 중 운용사가 선택하여 제안. ① 모든 민간출자자*에 대한 우선손실충당을 민간출자자 약정액의 10% 이하 적용(우선수익배분은 미적용), ② 우선손실충당을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초과 20% 한도 내 적용하며 우선수익배분 조건은 상기 표에서 ③ 조건을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하되, 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 - <특허계정> 운용사는 상기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표에서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방안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자조합의 투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 상 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항 목	내 용
<p>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혁신모험계정>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펀드에서 증액 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자분야와 주목적 투자대상과 투자의무 비율은 공고문과 동일하게 신청하고 규약에 변경 내용 추가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은 40% 이내 -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추가 제출(조합 규약(안),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
<p>출자금 납입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p>자조합 존속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
<p>관리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중진(소셜임팩트)·혁신모험(창업초기)·특허 계정 신청 운용사 및 지역기반 운용사(수도권 이외 본점 소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적용대상) 혁신모험·중진·특허계정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
<p>기준수익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소셜임팩트)·혁신모험(창업초기)·특허계정 : 0%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콜옵선 대상 지분 제외)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 중진계정 민간제한분야·혁신모험(혁신성장)·환경계정 : 3%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콜옵선 대상 지분 제외)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p>성과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적용대상) 혁신모험·중진·특허계정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

항 목	내 용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모험·중진·환경계정)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혁신모험·중진계정)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신주 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5%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472 600 1331 82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① 100분의 40이상인 경우</td> </tr> <tr> <td style="padding: 5px;">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100분의 50이상인 경우</td> </tr> <tr> <td style="padding: 5px;">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5%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td> </tr> </table> ○ (중진·혁신모험(혁신성장)·환경계정)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 투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 및 지급률은 추후 공지 <p>※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모태펀드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p>	①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②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5%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①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②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5%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모태펀드 콜옵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콜옵션 부여 가능.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 <p>* 적용대상 및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48 1464 1417 166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콜옵션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민간제안(지방투자)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모태펀드 출자지분 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중진계정) 민간제안(지방투자 외) (혁신모험계정) 혁신성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모태펀드 출자지분 20%</td> </tr> </tbody> </table> <p>* 행사 가격 :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485 1733 1283 177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text{원금} *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td> </tr> </table> <p>* 행사 기간 : Min (결성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투자기간 종료일)</p> <p>* 유한책임조합원 매수권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p> <p>*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p>	분야	콜옵션 한도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민간제안(지방투자)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중진계정) 민간제안(지방투자 외) (혁신모험계정) 혁신성장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text{원금} *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
분야	콜옵션 한도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민간제안(지방투자)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중진계정) 민간제안(지방투자 외) (혁신모험계정) 혁신성장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text{원금} *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								

항 목	내 용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적용 가능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포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정관에 사업목적에 미비할 경우 조합 결성일까지 해당 내용 반영을 완료하여야 함 ②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소셜임팩트 분야 제안사 중 Track1을 운용사가 선택한 경우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 소셜임팩트 분야 전문가 PT를 실시하며 이후 자문단 의견을 수렴, 2차 심의 이전에 운용사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 수정할 수 있음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8. 5. 18.(금)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8. 6월 중순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8. 9월 중순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및 USB 메모리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8. 5. 18.(금)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8. 5. 18.(금)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 및 USB메모리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8. 5. 14.(월) 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지하1층 블루룸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 가. 중진, 혁신모험 계정 : 02-2156-2060, fof@k-vic.co.kr
 - 나. 특허 계정 : 02-2156-2025, fof@k-vic.co.kr
 - 다. 환경 계정 : 02-2156-2187, fof@k-vic.co.kr
 - 라.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8. 5. 11.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최대주주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회사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조합운용실적	조합 수익성에 대한 평가
	투자실적	투자소진율 평가(조합 및 핵심인력 기준)
	준법성	최근 3개년 관련 법규 등 위반내용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경력,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편/참여인력의 팀웍, 핵심 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